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148호

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 상의 미비점 및 개선사항을 보완·반영하기 위해 「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63호, 2022.2.3.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24년 3월 13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

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사업의 추진체계, 지원 대상, 지원 방식, 사업비 관리 등 사업의 특성상 별도로 정하거나 예외적인 사항이 필요한 경우 인력양성 운영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 관리·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을 업무매뉴얼, 별도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22조제2항 후단 중 “박사과정”을 “박사과정 또는 석·박사 통합과정”으로 한다.

제31조제1항 중 “3월 15일”을 “1월 15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차년도 1월 31일”을 “당해 연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38조제1항 전단 중 “기관장, 부기관장을 포함하여 공간정보”를 “공간 정보”로, “사람”을 “전문가로서 학계, 경제·산업계, 연구기관 관계자 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이때”를 “이때,”로, “부기관장”을 “국토 교통부 소관부서의 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 출석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(개정 2024. 3. 13.)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지>

[별표 5]

공간정보 특성화고 학교지원금 편성·집행 기준표(제30조 관련)

1. 특성화고등학교

대분류	세목	용도	비고
프로그램 운영비	1)학생교육활동비	· 참여학생의 교육훈련, 전시회 참관, 공간정보 기업이해연수, 산업체 현장실습, 워크숍 비용 등	
	2)교원연수비	· 참여교사의 기술·직무연수, 전시회 참관, 현장 체험, 워크숍 비용 등	
	3)교재개발비	· 특성화분야의 전문교과 교재, 보조교재, 직업 기초능력 관련 교재의 제작을 위하여 소요되는 원고료	
	4)내부수당	· 정규수업 이외의 방과 후,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관련 내부강사수당	
	5)외부수당	· 산학겸임교사, 전문강사 초빙, 교재개발 감수, 각종 위원회 외부위원 수당 등	
	6)홍보비	· 신문광고, 브로셔 제작비, 홍보물 제작비, 전시회 참가운영비, 행사개최비 등	
	7)간식비	·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 참여 학생 간식비	
실습장비 구입 및 유지비	8)실습장비구입비	·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	
	9)유지보수비 및 시제품 설계·제작비	· 실습장 및 실습장비 유지보수, 특성화 홈페이지·DB 운영, 시제품 설계·제작비 등	
사업 관리비	10)업무관리수당	· 특성화고 총괄담당자, 실무담당자, 행정담당자 업무관리 수당	
	11)수업대체인력 운영비	· 총괄·실무담당자 수업대체인력 운영비	
	12)전담인력 운영비	· 사업 업무보조를 위한 비정규직 전담인력 인건비	
	13)업무추진비	· 특성화관련 위원회 운영, 산학협력 업체발굴 등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비	
	14)국내여비	· 사업관련 국내출장비	
	15)국외여비	· 특성화고 학생 해외연수비 및 인솔교사 국외출장비	
	16)일반수용비	· 인쇄비, 사무용품,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, 회계감사비, 도서구입비 등	
	17)간접비	· 당해년도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공통지원경비 등	

## 2. 특성화전문대학

대분류	세목	용도	비고
장학금	1)장학금	·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에 관련된 전문학사 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자 보조금 * 단, 국가장학금II 유형의 교내 장학금으로 지급 불가 ** 입학 전 학생, 휴학생, 졸업생, 졸업유예생 지급 불가	
프로그램 운영비	2)학생교육활동비	· 참여 학생의 교육훈련, 전시회 참관, 산업체 현장실습, 워크숍 비용 등	
	3)교원연수비	· 참여교원의 기술직무 연수, 전시회 참관, 현장체험, 워크숍 비용 및 학술 대회(세미나) 등록비 등	
	4)교재개발비	· 특성화분야의 전문교과 교재, 보조교재, 직업기초능력 관련 교재의 개발을 위하여 소요되는 원고료	
	5)외부수당	· 산학겸임교수, 전문강사 초빙, 교재개발 감수, 전문가 활용비, 각종 위원회 외부위원 수당 등	
	6)홍보비	· 신문광고, 브로셔 제작비, 홍보물 제작비, 전시회 참가운영비, 행사개최비 등	
실습장비 구입 및 유지비	7)실습장비구입비	· 실험실습에 필요한 SW 및 기자재 구입비	
	8)유지보수비 및 시제품 설계·제작비	· 실습장 및 실습장비 유지보수, 특성화 홈페이지·DB 운영, 시제품 설계·제작비 등	
사업 관리비	9)업무관리수당	· 특성화전문대학 관련 담당자 수당 · 사업행정 등 업무보조 수당	
	10)업무추진비	· 특성화관련 위원회 운영, 산학협력 업체 발굴 등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비	
	11)국내여비	· 사업관련 국내출장비	
	12)국외여비	· 특성화전문대학 학생 해외연수비 및 특성화 사업성과 및 교류를 위한 학술 세미나 등 교수 국외출장비 등	
	13)일반수용비	· 인쇄비, 사무용품,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, 회계감사비, 도서구입비 등	
	14)간접비	· 당해년도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공통지원경비, 산학협력단 경비 등	

### 3. 특성화대학원

대분류	세목	용도	비고
학교 지원금	1)인건비	·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의료 수당 등	
	2)교육과정개발비	·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재개발비, 교육프로그램개발비 등	
	3)실험실습비	· 연구에 사용하는 실험실습비	
	4)기타 교육운영비	· 인건비, 교육과정개발비, 장학금, 실험실습비 이외의 교육운영비	
	5)학교시설사용료	· 대학의 유·무형자산을 이용함에 따라 대학에 지급하는 비용	
	6)과학문화활동비	·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홍보 등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	
	7)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	· 지식재산권의 출원, 등록,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	
	8)직무수행경비	· 장학생 관리를 위해 지명된 조교, 장학생 대표 등에게 업무 수행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	
	9)기타 지원비	·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지원경비, 산학협력단 경비	

\* 지원금은 위의 비목별 편성·집행기준을 따르되 해당 특성화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 산학협력단 내부규정의 사업비 비목 편성기준에 부합하는 타 항목이 있을 경우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증빙



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특성화대학원은 학교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차년도 1월 31일까지 운영기관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 증빙자료 제출기한은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3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운영기관은 기관장, 부기관장을 포함하여 공간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15명의 운영위원을 구성한다. 이때 운영기관의 장과 부기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<신 설>

② (생략)

-----.

② -----  
----- 당해 연도  
12월 31일-----  
-----.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3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 
---- 공간정보-----  
-----  
----- 전문가로서 학계, 경제·산업계, 연구기관 관계자 등----- . 이때, -----  
----- 국토교통부 소관 부서의 장-----.

②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[별표 5] 개정 전

공간정보 특성화고 학교지원금 편성·집행 기준표(제30조 관련)

1. 특성화고등학교

대분류	세목	용도	편성한도
프로그램 운영비	1)학생교육활동비	· 참여학생의 교육훈련, 전시회 참관, 공간정보 기업이해연수, 산업체 현장실습, 워크숍 비용 등	
	2)교원연수비	· 참여교사의 기술·직무연수, 전시회 참관, 현장체험, 워크숍 비용 등	
	3)교재개발비	· 특성화분야의 전문교과 교재, 보조교재, 직업기초능력 관련 교재의 제작을 위하여 소요되는 원고료	전체 사업비의 10% 이내
	4)내부수당	· 정규수업 이외의 방과 후,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관련 내부강사수당	전체 사업비의 10% 이내
	5)외부수당	· 산학겸임교사, 전문강사 초빙, 교재개발 감수, 각종 위원회 외부위원 수당 등	
	6)홍보비	· 신문광고, 브로셔 제작비, 홍보물 제작비, 전시회 참가운영비, 행사개최비 등	
	7)간식비	·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 참여 학생 간식비	
실습장비 구입 및 유지비	8)실습장비구입비	·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	전체 사업비의 50% 이내
	9)유지보수비 및 시제품 설계·제작비	· 실습장 및 실습장비 유지보수, 특성화 홈페이지·DB 운영, 시제품 설계·제작비 등	
사업 관리비	10)업무관리수당	· 특성화고 총괄담당자, 실무담당자, 행정담당자 업무관리 수당	전체 사업비의 20% 이내
	11)수업대체인력 운영비	· 총괄·실무담당자 수업대체인력 운영비	전체 사업비의 5% 이내
	12)전담인력 운영비	· 사업 업무보조를 위한 비정규직 전담인력 인건비	
	13)업무추진비	· 특성화관련 위원회 운영, 산학협력 업체발굴 등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비	전체 사업비의 10% 이내
	14)국내여비	· 사업관련 국내출장비	전체 사업비의 5% 이내
	15)국외여비	· 특성화고 학생 해외연수비 및 인솔교사 국외출장비	
	16)일반수용비	· 인쇄비, 사무용품,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, 도서구입비 등	
17)간접비	· 당해 회계연도 회계정산 감사비		

## 2. 특성화전문대학

대분류	세목	용도	편성한도
프로그램 운영비	1)학생교육활동비	· 참여 학생의 교육훈련, 전시회 참관, 산업체 현장실습, 워크숍 비용 등	
	2)교원연수비	· 참여교원의 기술·직무 연수, 전시회 참관, 현장체험, 워크숍 비용 및 학술 대회(세미나) 등록비 등	
	3)교재개발비	· 특성화분야의 전문교과 교재, 보조교재, 직업기초능력 관련 교재의 개발을 위하여 소요되는 원고료	전체 사업비의 10% 이내
	4)외부수당	· 산학겸임교수, 전문강사 초빙, 교재개발 감수, 전문가 활용비, 각종 위원회 외부위원 수당 등	
	5)홍보비	· 신문광고, 브로셔 제작비, 홍보물 제작비, 전시회 참가운영비, 행사개최비 등	
실습장비 구입 및 유지비	6)실습장비구입비	· 실험실습에 필요한 SW 및 기자재 구입비	전체 사업비의 50% 이내
	7)유지보수비 및 시제품 설계·제작비	· 실습장 및 실습장비 유지보수, 특성화 홈페이지·DB 운영, 시제품 설계·제작비 등	
사업 관리비	8)업무관리수당	· 특성화전문대학 관련 담당자 수당 · 사업행정 등 업무보조 수당	전체 사업비의 15% 이내
	9)업무추진비	· 특성화관련 위원회 운영, 산학협력 업체 발굴 등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비	전체 사업비의 5% 이내
	10)국내여비	· 사업관련 국내출장비	
	11)국외여비	· 특성화전문대학 학생 해외연수비 및 인솔교수 국외 출장비 · 특성화 사업성과 및 교류를 위한 학술 세미나 등 교수 국외출장비 등	전체 사업비의 10% 이내
	12)일반수용비	· 인쇄비, 사무용품,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, 회계감사비, 도서구입비 등	전체 사업비의 5% 이내
	13)간접비	· 당해년도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공통지원경비, 산학협력단 경비 등	전체 사업비의 5% 이내

### 3. 특성화대학원

대분류	세목	용도	편성한도
학교 지원금	1)인건비	·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의료 수당 등	
	2)교육과정개발비	·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재개발비, 교육프로그램개발비 등	
	3)실험실습비	· 연구에 사용하는 실험실습비	
	4)기타 교육운영비	· 인건비, 교육과정개발비, 장학금, 실험실습비 이외의 교육운영비	
	5)학교시설사용료	· 대학의 유·무형자산을 이용함에 따라 대학에 지급하는 비용	
	6)과학문화활동비	·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홍보 등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	
	7)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	· 지식재산권의 출원, 등록,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	
	8)직무수행경비	· 장학생 관리를 위해 지명된 조교, 장학생 대표 등에게 업무 수행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	전체 사업비의 10%이내
	9)기타 지원비	·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지원경비, 산학협력단 경비	학교지원금의 10%이내

\* 지원금은 위의 비목별 편성·집행기준을 따르되 해당 특성화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 산학협력단 내부규정의 사업비 비목 편성기준에 부합하는 타 항목이 있을 경우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증빙

\*\* 직무수행경비 편성시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(내부 공문 등) 제출

[별표 5] 개정 후

공간정보 특성화고 학교지원금 편성·집행 기준표(제30조 관련)

1. 특성화고등학교

대분류	세목	용도	비고
프로그램 운영비	1)학생교육활동비	· 참여학생의 교육훈련, 전시회 참관, 공간정보 기업이해연수, 산업체 현장실습, 워크숍 비용 등	
	2)교원연수비	· 참여교사의 기술·직무연수, 전시회 참관, 현장 체험, 워크숍 비용 등	
	3)교재개발비	· 특성화분야의 전문교과 교재, 보조교재, 직업 기초능력 관련 교재의 제작을 위하여 소요되는 원고료	
	4)내부수당	· 정규수업 이외의 방과 후,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관련 내부강사수당	
	5)외부수당	· 산학겸임교사, 전문강사 초빙, 교재개발 감수, 각종 위원회 외부위원 수당 등	
	6)홍보비	· 신문광고, 브로셔 제작비, 홍보물 제작비, 전시회 참가운영비, 행사개최비 등	
	7)간식비	·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 참여 학생 간식비	
실습장비 구입 및 유지비	8)실습장비구입비	·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	
	9)유지보수비 및 시제품 설계·제작비	· 실습장 및 실습장비 유지보수, 특성화 홈페이지·DB 운영, 시제품 설계·제작비 등	
사업 관리비	10)업무관리수당	· 특성화고 총괄담당자, 실무담당자, 행정담당자 업무관리 수당	
	11)수업대체인력 운영비	· 총괄·실무담당자 수업대체인력 운영비	
	12)전담인력 운영비	· 사업 업무보조를 위한 비정규직 전담인력 인건비	
	13)업무추진비	· 특성화관련 위원회 운영, 산학협력 업체발굴 등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비	
	14)국내여비	· 사업관련 국내출장비	
	15)국외여비	· 특성화고 학생 해외연수비 및 인솔교사 국외출장비	
	16)일반수용비	· 인쇄비, 사무용품,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, 회계감사비, 도서구입비 등	
17)간접비	· 당해년도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공통지원경비 등		

## 2. 특성화전문대학

대분류	세목	용도	비고
장학금	1)장학금	·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에 관련된 전문학사 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자 보조금 * 단, 국가장학금II 유형의 교내 장학금으로 지급 불가 ** 입학 전 학생, 휴학생, 졸업생, 졸업유예생 지급 불가	
프로그램 운영비	2)학생교육활동비	· 참여 학생의 교육훈련, 전시회 참관, 산업체 현장실습, 워크숍 비용 등	
	3)교원연수비	· 참여교원의 기술직무 연수, 전시회 참관, 현장체험, 워크숍 비용 및 학술 대회(세미나) 등록비 등	
	4)교재개발비	· 특성화분야의 전문교과 교재, 보조교재, 직업기초능력 관련 교재의 개발을 위하여 소요되는 원고료	
	5)외부수당	· 산학겸임교수, 전문강사 초빙, 교재개발 감수, 전문가 활용비, 각종 위원회 외부위원 수당 등	
	6)홍보비	· 신문광고, 브로셔 제작비, 홍보물 제작비, 전시회 참가운영비, 행사개최비 등	
실습장비 구입 및 유지비	7)실습장비구입비	· 실험실습에 필요한 SW 및 기자재 구입비	
	8)유지보수비 및 시제품 설계·제작비	· 실습장 및 실습장비 유지보수, 특성화 홈페이지·DB 운영, 시제품 설계·제작비 등	
사업 관리비	9)업무관리수당	· 특성화전문대학 관련 담당자 수당 · 사업행정 등 업무보조 수당	
	10)업무추진비	· 특성화관련 위원회 운영, 산학협력 업체 발굴 등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비	
	11)국내여비	· 사업관련 국내출장비	
	12)국외여비	· 특성화전문대학 학생 해외연수비 및 특성화 사업성과 및 교류를 위한 학술 세미나 등 교수 국외출장비 등	
	13)일반수용비	· 인쇄비, 사무용품,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, 회계감사비, 도서구입비 등	
	14)간접비	· 당해년도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공통지원경비, 산학협력단 경비 등	

### 3. 특성화대학원

대분류	세목	용도	비고
학교 지원금	1)인건비	·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의료 수당 등	
	2)교육과정개발비	·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재개발비, 교육프로그램개발비 등	
	3)실험실습비	· 연구에 사용하는 실험실습비	
	4)기타 교육운영비	· 인건비, 교육과정개발비, 장학금, 실험실습비 이외의 교육운영비	
	5)학교시설사용료	· 대학의 유·무형자산을 이용함에 따라 대학에 지급하는 비용	
	6)과학문화활동비	·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홍보 등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	
	7)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	· 지식재산권의 출원, 등록,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	
	8)직무수행경비	· 장학생 관리를 위해 지명된 조교, 장학생 대표 등에게 업무 수행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	
	9)기타 지원비	·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지원경비, 산학협력단 경비	

\* 지원금은 위의 비목별 편성·집행기준을 따르되 해당 특성화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 산학협력단 내부규정의 사업비 비목 편성기준에 부합하는 타 항목이 있을 경우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증빙